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 - 35
------	---------

제출년월일 : 2015. 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로법」 등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맞추어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점용료 산정기준 등 도로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조례규정을 삭제하는 등 그 간 일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도로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나. 조례에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정비
 - 구두수선대 등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상을 삭제
- 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1)
 -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을 따르도록 함
-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규제여부 :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5. 3. 19. ~ 4. 8.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조제5항제10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을 “제55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다.
제3조 중 “제41조제3항 및 영 제42조제2항”을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1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38조 및 영 제28조”를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로, “법 제94조”를 “법 제72조”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을 “남은 금액에 대하여 영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제21조”를 “제21조 및 제23조”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5,000원”을 “5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42

조제3호”를 “법 제68조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로 한다.

제9조의2 중 “영 제74조제1항의 별표 5 중 제2호 나목”을 “영 제105조 관련 별표 7 중 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38조”를 “법 제61조”로, “제42조제1항제2호”를 “제49조 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중 위반행위란의 “법 제38조제1항”을 “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근거법조문란의 “법 제101조제2항제1호”를 “법 제117조제2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영 별표 3 제7호 에서 정한 점용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점용면적 $1m^2$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2. 영 별표 3 제11호 에서 정한 점용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 제5호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중 차양시설, 비거리개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점용면적 $1m^2$	1년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제10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u> 2. <u>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u>. 다만,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 회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3. (생략) <p>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단서 신설></p>	<p>제2조(도로점용허가) -----</p> <p>-----</p> <p>----- 제55조제12호에 따른-----</p> <p>-----</p> <p>-----</p> <p>-----</p> <p>1. <삭 제></p> <p>-----</p> <p>2. <u>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u>. -----</p> <p>-----</p> <p>-----</p> <p>-----</p> <p>3. (현행과 같음)</p> <p>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p> <p>-----</p> <p>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 다만, 별표 1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38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② ~ ⑤ (생략)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

법 제72조-----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남은

금액에 대하여 영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른-----

-----.

-----.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 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삭 제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 제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별표 4

② 삭 제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제21조 및 제23조

② 삭 제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5천원 법 제68조제3호

② 구청장은 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9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구 청장이 영 제74조제1항의 별표 5 중 제2호 나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사무위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
-----.

제9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
----- 영 제105조 관련 별표
7 중 제2호가목-----

-----.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

--- 제49조제1항제2호-----
-----.

② 삭 제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임조례」에 따라 해당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구청장이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주·공중전화등지상시설물	전주·가로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개	1,850
	지증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 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7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m ²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전력구 등지하매설물	외경 0.1미터이하	길이 1m	1,150
	외경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		2,400
	외경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		4,850
	외경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		7,250
	외경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		9,650
	외경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		12,100
	외경 1.0미터초과 2.0미터이하		18,100
	외경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		30,150
	외경 3.0미터초과		42,250
	지중정착 외경	길이 1년	1,800

(이하 “구”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 단위	기간 단위	
			<삭 제>
			<삭 제>

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0.1미터초과 외경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	1m			3,600
	외경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				7,200
	외경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				10,850
	외경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				14,400
	외경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				18,100
	외경 1.0미터초과 2.0미터이하				27,100
	외경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				45,200
	외경 3.0미터초과				63,250

3. 광고탑·광고판·간판을 제외 한다)기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현수막·사설안내 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일시 설치한 것(1월 미만 적용)	표시 면적 1m'	1일	400
	돌출간판	타		1년	122,000
				1년	58,400
	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 및 그 밖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사설안내 표지		1개	101,650
				1일	400
아치	도로 횡단	표시 면적 1m'	1년	244,000	
	기타	1m'		122,0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 면적 1m'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자동차관련시설(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삭 제>

<삭 제>

		물적치장·휴게 소 등) 및 부설주차장 10면이상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		
	기	타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m^2$	토지가격에 0.016을 곱한 금액
6. 지하상 가·지하설 통로 그 밖 에 이와 유 사한 것	건축 물	1층인 건축물 2층인 건축물 3층이상인 건축물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 하는 통로 육교 상 가 · 기 타	점용 면적 $1m^2$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토지 가격 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 동 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점용 면적 $1m^2$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토지가격 에 0.02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 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 벽·발 판·대기소 등의 공사 용 시설 및 재료·굴착 부분 기타		일시 점용한 것 기타	점용 면적 $1m^2$	1일 400 토지가격 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밀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m^2$	토지가격 에 0.02를 곱한 금액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 조제5호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 로 설치한 시설물 중 차양시설, 비 가리개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시설			점용 면적 $1m^2$	토지가격에 0.0001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내지 제10 호외의 공 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위탁판매 주택	점용 면적 $1m^2$	토지가격 에 0.01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5를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 영별 표 3 제7호 에 서 정한 점용 률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점용 면적 $1m^2$	1년	토지 가격에 0.007을 곱 한 금액 토지 가격에 0.02를 곱 한 금액
				<삭 제>

2. 영별 표 3 제1호 에 서 정한 점 용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 통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 한 조례」 제2조 제5호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차양시 설, 비가리개시설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점용 면적 $1m^2$	1년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삭 제>

			곱한 금액
			토지가격 에 0.05를 곱한 금액
기타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의2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부과기준	과태료 상한금액
법 제38조 제1항에 따 른 도로점 용허가 면 적을 초과 하여 점용 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 제1호	(생 략)	(생 략)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의2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부과기준	과태료 상한금액
법 제61조 제1항에 따 른 도로점 용허가 면 적을 초과 하여 점용 한 경우	법 제117조제2항 제1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